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개443.2-348 (전화번호 725-7661-9)	전결 규정 4 조 7 항 부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4. 11. 1.			
보존연한	영구			
보조기관	부시장	전결	함범무담당관(고시안심) 김사필 재개발행정계장 김 재개발사업2계장 김	
	도시계획국장	김		
	재개발과장	김		
기안책임자	김창영	10. 15(이동훈)	조	
경유수신참조	구안참조 공고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고 <input type="checkbox"/> 통고 <input type="checkbox"/>	고시제발 623 10. 11. 1	동 제 검인 1984. 11. 01	
제목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제1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등고시 제46호(76, 4, 7)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인주 대표이사 백상진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제12조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정서
	2. 도시재개발법제15조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제28호(84.9.7)로 신청서류를 3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였던바,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도시재개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인가코자하며			관인
	3. 인가신청서의 사업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변경결정된 사업계획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도시재개발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안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결정으로			발송

자 하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4 호

서울 도심지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번무실사 1984.11.17 제 313호	담 당사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서	전결		

1. 서울 도심지 재개발사업 서린구역제3지구 에 대한 사업 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종로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11. 1.

서울특별시 장

가.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조서 (서린구역)

1) 지구 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제3지구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	923 개 ²	
변경	"	"	909.8	본 할수량경과

2) 건축 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주 용 도	배 열
기정	제3지구	923 개 ²	41.97%	420.14%	10/4	업무시설	별첨(생략)
변경	"	909.8	43.4	426.37	10/4	"	"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3 호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번무실사 1984.10.17 제 311호	담 당사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서	전결		

1. 건설부 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 고시 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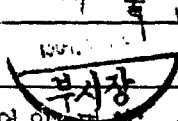
호 (76.4.7) 로 사업 계획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2 호 (84.8.14) 로 사 업 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58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4. 11. 1.

서울특별시

가. 인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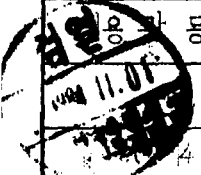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 (8필지)
- 3) 시행면적: 1,072.1 m^2
- 4) 시행자: 주식회사 인주 대표이사 백상진
- 5) 추진 사무소의 소재지: 종로구 서린동 111-1
- 6) 시행기간: 84. 11. 1. - 86. 10. 30
- 7) 건축 계획(건축규모 및 배율은 건축허가로 확정)

- 대지면적: 909.8 m^2
- 건폐율: 43.4%
- 용적율: 426.31%
- 층 수: 지상10층, 지하4층
- 주 용 도: 업무시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

9) 사업시행계획서: 서울특별시공고 제28호(84.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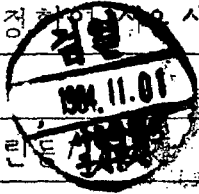
10) 규 약 별첨(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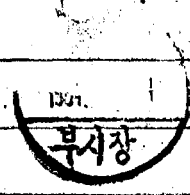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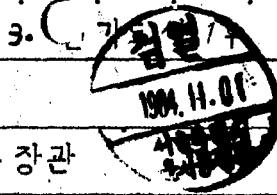
인 가 증 (안)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증

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46호(76.4.7)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

<p>후 변경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72조규정에 의하여</p> <p>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4. 11.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특별 시장</p> <p>가. 인가 내용 (제3안 "가"항 이기시행)</p> <p>나. 인가 조건</p> <p>1)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착수할것</p> <p>2) 시행인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시재개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38조, 제39조규정에 의한 본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수 있도록 통보(본양신청시 납부해야할 비용부담액 명시)할것</p> <p>3) 시행인가 즉시 관할 구청 및 관할등기소에 인가내용을 통지할것이며 지적법제21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할것.</p> <p>4) 본양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도시재개발법제47조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한후 시의 인가를 받을것.</p> <p>(제5안)</p> <p>수신 종로구 서린동</p> <p>주식회사 인주 대표이사 백상진</p> <p>제목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p> <p>1. 귀하께서 84. 8. 29 우리시에 제출하신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하였고 통보하니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p>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p> <p>2. 인가증 1부</p>
--





(제6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등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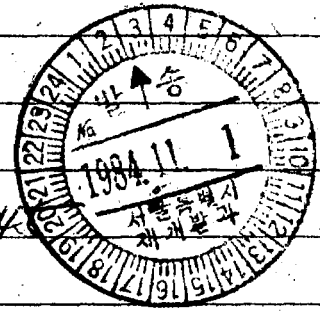
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제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46호(76.4.7)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7부
2. 인가도서 1부

(제7안)

수신 총무처장관, 공보관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제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46호(76.4.7)로 사업계획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하였기 관(시)보에 게재 의뢰 합니다.

가. 게재종별: 고시문

나. 게재건명

1)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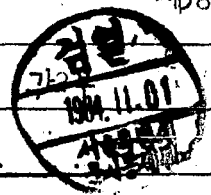
2)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다. 게재근거: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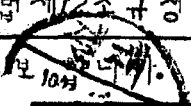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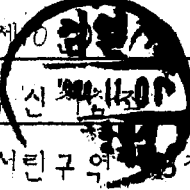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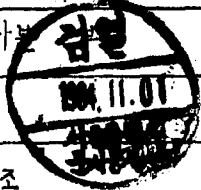
제58조

첨부: 고시문 사본

(제8안)



수신	종로구청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제목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p>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46호(76.4.7)로 사업계획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서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것.</p>	
첨부	고시문 사본 (제9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p>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재개발구역지정 되고, 동고시제46호(76.4.7)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12조규정에 의하여 별첨 고시문서본과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것)</p>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수신처	서울민사지방법원(등기과),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1.2과, 재무과, 수도공사과)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서린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p>1. 건설부고시제367호(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46호(76.4.7)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84.8.14)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서린구역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12조규정에 의하여 별첨 고시문서본과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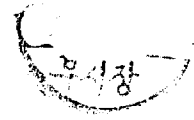
2. (하의 소유 재산(또는 권력)이 있는 시연구역 제3구역의 재

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귀하께서는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규정에 의거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분양신청 또는 권력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별첨 명단

수 신 처 명 단



1. 박 병수 광서구 목동 525- 5
2. 백 남진 종로구 서린동 111
3. 백 승진 종로구 동숭동5- 13
4. 백 영혜 강남구 반포동761 반포 아파트55-506
5. 백 상진 강남구 압구정동 산2-19 한양아미트72- 211
6. 백 향진 종로구 서린동 134
7. 백 호준 광서구 목동 525- 5
8. 한국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
9. 종로구 서린동 111 백 우진
10. 아포구 서교동442-4 배 성용
11. 강남구 반포동 산21-1 이 대우
12. 종로구 서린동 111 백 형숙
13. 강남구 논현동 142 영풍건설(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가. 토 지

지 번	지 목	지 권	시행면적	소 유 권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주 소	성 명	권리종목	주 소	성 명
서린동 111-1	대	578.5	500.4	강서구 북동525-5	박병수 외 7인	근저당	강남구 논현동 142-1	영풍건설(주)
" 133-1	"	297.2	297.2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환은행			
" 134-1	"	57.2	57.2	강서구 북동525-5	박병수 외 8인	근저당	강남구 논현동 142	영풍건설(주)
" 157-5	도	1,946.1	7.5		서울특별시			
" 125-4	"	1,481	45		"			
" 82-3	"	513.4	2.5		"			
" 76	대	132.2	132.2	마포구 서교동 442-4	배성용 외 1인			
" 133-3	"	30.1	30.1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환은행			
계			1,072.1					

나. 건 물

지 번	용도	구 조	면 적	소 유 권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주 소	성 명	권리종목	주 소	성 명
서린동 111-1	영업	목조외집	472.73	강서구 북동 525-5	박병수 외 7인			
" 133-1	"	철근콘크리트조, 스택브	3,523.24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환은행			
" 134-1	"	목조스레트집	99.18	강서구 북동525-5	박병수 외 7인			
" 76	"	철근콘크리트조, 명옥개	349.36	마포구 서교동 442-4	배성용 외 1인			